



수 신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폐수처리시설 운영환경 관리기준 강화 및 환경 관리설비 지원사업 안내

귀 사업장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시행규칙 제7조 [별표5-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의 개정에 따라 폐수처리 시설의 운영환경 관리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폐수의 적정 처리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환경관리설비 설치 의무

다음 설비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1. IoT 기반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2. 자동 슬러지 제거장치

나. 환경관리설비 설치 지원사업

※ 세부 지원요건 및 환급기준은 붙임 1면 참조

다. 지도·점검

관할 행정기관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 확인합니다.

- 환경관리설비 설치 여부
- 정상 가동 여부
- 폐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행정처분 또는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주시청

수신자 : 폐수처리시설 운영 사업주 귀하

담당 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주 무 관 : 이아영 환 경 국 장 : 이민석 전 결 2026.07

전 화 번 호 : 010-2716-5392 F A X : 063-281-2613

우 [5499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